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71903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5. 18.

판결 선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30,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530,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30. '2015년도 오산지사 고압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적격심사제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서 주식회사 헤일전설(이하 '헤일전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헤일전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6.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금액은 '576,911,52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1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6조(주계약의 해지)

1 보증채권자는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2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1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지급시기)

조합은 제8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원고는 2014. 12. 29. 헤일전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건명	2015년도 오산지사 고압D 공사
계약단가	64,291,884원
추정 계약금액	3,846,076,800원(공급가액 : 3,496,433,455원, 부가가치세 349,643,345원)
계약보증금	576,911,520원(종류 : 전기공사공제조합증권)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및 계약보증금 지급 청구

1) 한편 헤일전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대한전기공사협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입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인 2015. 3. 23.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헤일전설이 이 사건 입찰에 제출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상의 2009년, 2010년,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액이 허위 실적에 해당하고, 전기공사 실적액 감액에 따라 기존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헤일전설에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의 효력은 상실되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5. 3. 26. 헤일전설에 이 사건 입찰에 제출된 전기공사 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가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7호(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5. 4. 15. 헤일전설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15. 4. 15.자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계약보증금 중 준공 완료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411,530,48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 현황

이 사건 공사는 일부가 이행되었는데, 준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도급비 금액은 1,137,951,120원, 준공(기성) 금액은 1,102,540,243원, 계약보증금은 165,381,036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1) 건설공제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 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급공사의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능력보다는 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 등이 주로 문제되므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따라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이러한 계약보증금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의 보증책임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1조에서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의 사유에 제한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데,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에서는 '입찰에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적격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단계의 부정입찰행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점, ④ 또한 허위 공사실적 제출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위 적격심사기준은 '입찰에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때'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사실적을 속인 행위가 밝혀짐으로써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현실화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자(채무자)가 입찰단계에 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입찰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사실적을 속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채무자)가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헤일전설이 허위의 전기공사실적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밝혀짐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헤일전설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 때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와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헤일전설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라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일부가
이행되었는데, 준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도급비 금액은 1,137,951,120원,준공(기성) 금액은
1,102,540,243원, 계약보증금은 165,381,03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의 계약보증금 합계 576,911,520원에서 준공완성분 해당
계약보증금 165,381,036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계약보증금 411,530,4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소요되는 시일은 7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청구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1,530,4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청구일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2.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을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헤일전설은 허위실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던 것이므로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입찰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입찰에 기초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유의서 제14조 제4호에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입찰에서 헤일전설이 허위의 공사실적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입찰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제7호에서 '입찰에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입찰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그와 같은 입찰에 기해 선정된 낙찰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사유를 해제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② 헤일전설의 부정입찰행위는 허위의 공사실적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허위의 공사실적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된 취지는 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③ 그런데 헤일전설은 이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뒤늦게

헤일전설의 위와 같은 부정입찰행위사실을 알게된 원고도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사유로만 삼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헤일전설의 부정입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헤일전설의 부정입찰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헤일전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헤일전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허위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제출한 행위는 보증기간 이전에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계약의 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헤일전설은 원고가 요구하는 실적을 갖추지 못하여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공사이행이라는 계약상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사고는 '헤일전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허위의 전기공사실적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부정입찰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사실적을 속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미선, 판사 오지애, 판사 박진욱